

(2쪽 중 1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군·구청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사업자등록정보, 임차보증금 포함)·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유의 사항	확 인 (√ 체크)
-------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주거급여 수혜여부 결정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여부를 결정하며, 월세지원금 지급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5.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2 년 10 월 25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5.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6.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 부채 증빙 서류